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688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6887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2877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김홍민

변론종결 2024. 4. 19.

판결선고 2024. 6. 28.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2877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22. 5. 31. 체결된 복지용구렌탈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65,66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40,9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5,66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0,9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주식회사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분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8. 17.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또한 2023. 8.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23. 11. 6.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후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23. 11. 9.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23. 11. 6.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침대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피복절연선과 케이블조립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복지용품 판매와 렌탈 및 소독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J 김포점'이라는 상호로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2) 원고 A는 2022. 1. 3.부터 2022. 8. 9.까지 C에게 욕창예방방석 트리니티쿠션, 이동변기 그라비노, 목욕의자 등 합계 67,665,100원 상당의 복지용구를 공급하였고, 원고 B은 2021. 4. 30.부터 2022. 2.까지 C에게 미끄럼방지 고무매트 등 합계 42,990,600원 상당의 복지용구를

공급하였는데, C는 2022. 9. 30.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으로 각 2,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그런데 C는 2022. 5. 31. 피고와 사이에 C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용구 렌탈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대금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K(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K'라 한다)는 위 양도 · 양수를 동의하는 내용의 '복지용구 렌탈제품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관련된 유무형 자산을 포괄적으로 J 김포점에게 양도함에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C와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J 김포점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고, C가 서비스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양수도일로 이후 문제(클레임, 공단환수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이전의 사안일 경우 C가 책임을 지며, 사업양수도일로 이후의 사안일 경우 J 김포점 책임 하에 처리토록 한다.

제3조(양도양수세부내용)

C와 J 김포점은 사업양수도일을 2022년 7월 1일부로 하고, 사업양수도 가액은 일금 일억육천만(₩16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 일금 육천만(₩6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한다.

C는 J 김포점이 지급한 계약금 및 사업양수도 가액 전액을 J 김포점으로부터 받는 즉시 K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C에 대하여 75,353,393원[= 65,665,100원(= 위 67,665,100원 - C가 변제한 2,000,000원) + 65,665,100원에 대하여 사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 27.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4. 19.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688,293원{= 65,665,100원 × (1 + 84/366) × 12%}]의 채권액을, 원고 B은 C에 대하여 47,038,393원[= 40,990,600원(= 위 42,990,600원 - C가 변제한 2,000,000원) + 40,990,600원에 대하여 사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 27.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4. 19.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47,793원{= 40,990,600원 × (1 + 84/366) × 12%}]의 채권액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의 위 각 채권액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营业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营业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또한,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양천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주식회사 L의 2023. 3. 16.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가 2022.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 제1조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C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관련된 유무형 자산을 포괄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에 따라 C의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C의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10,879원의 예금 채권과 이 사건 사업이 전부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출금채무 34,999,989원,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108,953,300원, K에 대한 청산금채무 16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③ 특히,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인 2022. 8. 5. 폐업하기까지 하였다.

④ 채무초과상태인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이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여기에 피고가 C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선의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영업재산 및 영업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C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의 양도대금은 160,000,000원인 사실,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4. 19. 기준으로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은 75,353,393원이고,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은 47,038,39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은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액 중 적은 금액인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22. 5. 31.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 A에 대하여는 75,353,393원, 원고 B에 대하여는 47,038,3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5,353,393원, 원고 B에게 47,038,3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훈, 판사 이종채, 판사 허일승